



국제사이버보안인증협회
International Cyber Security Certification Association

定 款

2022. 8. 23

(창립총회 이전의 초안 자료)

국제사이버보안인증협회

정 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단체의 명칭을 '국제사이버보안인증협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칭하고, 영어 명칭은 International Cyber Security Certification Association (약칭 : ICSCA) 로 표기한다.

제2조 (소재지) 본 법인의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두며 지부(분사무소)는 국내 필요한 지역에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ISO 국제표준 인증심사원, CISO, CPO, DPO 등 산업 현장 전문가 그룹들이 모여 전 산업분야에서 요구되는 조직의 관리적·물리적·기술적·법률적 관점의 정보보호관리체계 수립 지원을 통하여 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며, 국내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심사의 우수성을 국제 사회로 전수하고 사이버보안 분야의 산업기술 및 표준화 조사, 연구, 개발 및 보급 촉진과 회원간의 능력 향상 및 글로벌 활동지원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의 종류)

본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의 본질에 부합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전개한다.

1. 국내·외 산업기술 및 사이버보안 표준화 보급·수집 등을 위한 활동
2. 국내·외 산업기술 및 사이버보안 표준정책 동향분석, 연구개발 등을 위한 활동
3. ISO/IEC 국제표준화 산업기술 및 정보보호 인증 민간자율기구 등을 위한 활동
4. 국내·외 산업기술 및 사이버보안 표준인력 교육 및 양성 등을 위한 활동
5. 국내·외 인증심사원의 능력 및 심사품질의 전문성 향상 지원 활동
6. 국내·외 인증심사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사, 연구 지원 활동
7. 대국민 산업기술 및 사이버보안 인식 확산을 통해 수준 제고 등을 위한 활동
8. 산업기술 및 사이버보안 문화 형성을 위한 대국민 홍보 캠페인 전개 활동
9. 산업기술 및 사이버보안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각종 연구사업과 교재편찬 활동
10. 산업기술 및 사이버보안 산업체 실무자 연수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사업
11. 산업기술 및 정보보호 관련 국내외 회의/대회 개최 및 참가유치·홍보 지원 및 자문 활동
12. 회원 간의 정례 간담회, 세미나, 워크숍, 컨퍼런스 개최 등 교육사업
13. 회원 간의 공동이익 도모, 권익보호, 복리증진 및 후생에 관한 장학,상조,공제사업
14. 국가기관이 위탁 또는 지원하는 사업
15. 기타 법인의 설립목적 수행을 위한 공익, 봉사활동 등 회장이 지정하는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과 종류)

- ① 본 법인의 회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본 법인의 제3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한 사람으로 하며, 회원은 정회원과 일반회원, 협력회원, 기업회원, 사이버회원, 후원회원 등으로 정규직과 일용직, 봉사직으로 구분하며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는 소정의 가입절차를 필한 자(마친 자, 개인, 법인)으로 한다.
- ② 정회원과 일반회원, 협력회원, 기업회원, 사이버회원은 본 법인의 회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모든 시민으로 하며, 후원회원은 후원금, 노력봉사 등의 방법으로 후원회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으로 한다.
- ③ 사이버회원, 후원회원은 본 법인의 회원으로서의 권리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
- ④ 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 ① 정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정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간행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 이행
3. 회원은 회원 간의 상호교류, 협력하고 친목을 다지며, 회원으로서의 명예를 선양하고 품위를 유지할 의무의 준수
4. 정회원은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와 정관의 준수 및 본 법인이 주최하는 각종 회의와 활동 사업에 참여할 의무를 갖는다.

제8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본 법인에서 탈퇴 할 수 있으며 사무국에 탈퇴 의사를 서면 또는 구두로 한다. 단 탈퇴 후 재가입은 불허한다.

제9조 (회원의 징계)

- ① 회원의 징계는 경고, 자격정지 및 제명으로 한다.
- ② 본 법인은 다음과 같은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 가. 회원으로서의 회칙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나. 본 법인의 각종 교육, 회의와 행사에 상당기간 참석하지 아니한 자.
 - 다.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한 자.
 - 라. 그 밖에 이사회가 징계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자.
- ③ 징계의 절차 및 방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사장)이 행하되 결정전에 그 대상자가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 (회원의 제명)

- ①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 의결로써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 ② 회원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제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 ① 법인은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이사장) 1명
 2. 고문 1인 이상 10명 내외
 3. 수석부회장 1인 이상 10명 내외 (상근 수석부회장 1명을 둘 수 있다.)
 4. 부회장 1인 이상 10명 내외
 5. 이사 3인 이상 50명 내외 (수석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1인을 포함한다)
 6. 감사 1명 (다만, 감사는 2인 이하로 정하며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서 상임감사 1명을 둘 수 있다.)
- ② 임원에 관한 사항은 회장(이사장)이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 (임원의 선임)

- ①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취임한다.
- ② 회장(이사장)은 이사회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 ③ 임원선임에 관한 사항은 회장(이사장)이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 ④ 이사에는 근로자대표 1인, 서비스수혜자 또는 그 대변조직의 성원 1인, 연계기업 대표 1인을 포함할 수 있다.
- ⑤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6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본문에 따라 선출되는 이사는 보선할 수 있다.
- ⑥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⑦ 고문은 이사회 의결을 들어 회장(이사장)이 위촉한다.

제13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4조 (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1년(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② 회장(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임원의 임기는 회장(이사장)이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제16조 (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
- ② 이사는 회장(이사장)을 보좌하며 회장(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부의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및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다.
- ③ 사무총장은 회장(이사장)의 감독하에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 및 회계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거나 발언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과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 법인의 업무 및 회계상황에 관하여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때 이를 총회 및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7조 (명예회장) 법인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를 이사회 의결로서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단, 전임 회장은 명예회장이 된다.

제18조 (후원 회장) 본 법인의 재정 지원을 위하여 후원 회장을 위촉할 수 있다.

제19조 (연구 및 자문위원) 본 법인의 제4조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필요한 전문적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를 연구위원 및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 4 장 회 의

제20조 (회의)

- ① 법인에 총회를 둔다.
- ② 총회는 본 법인의 최고의결기구이다.
- ③ 총회는 총회소집일을 기준으로 회원명부에 등재된 회원으로 한다.

제21조 (총회의 구성)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회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각 소집한다.
- ④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사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 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 (총회의 의결사항)

- ①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임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이사회에서 발의한 주요사업의 인준
 7. 주소지 변경 의결
 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9. 기타 법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3조 (의결 정족수)

- ① 총회의 의결은 이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다만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위임자의 기명날인 받은 후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총회의 의결은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24조 (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사회

제25조 (이사회의 구성)

- ① 법인에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본 법인의 집행기구이다.
- ② 이사회는 회장(이사장)과 부회장단, 이사, 사무총장으로 구성한다.
- ③ 회장(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6조 (이사회 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회계년도 개시 1월이전과 매 회계년도 종료 2월 이전에 각 소집한다.
- ③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사장)이 각 소집한다.
 1. 회장(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 할 때
 3. 감사가 직무상 필요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④ 회장(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7조 (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이나 위임받은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정관 시행에 따르는 세칙과 규정의 제·개정
7. 회원의 징계
8.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9. 지부의 창설 및 승인
10. 각 지부의 운영 및 제반 활동의 총괄
11. 기타 회장이 부의하거나 총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28조 (의결방법) 이사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 (서면결의)

- ① 회장(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0조 (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때는 회장(이사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 ② 이사회 의결권은 회장(이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이사에 국한한다)

제31조 (이사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은 의장, 출석이사의 기명날인을 하여야 하며,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함.

제 6 장 사무국과 위원회

제32조 (사무국)

- ① 회장(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 법인의 사업 및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실무적 집행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의 편제, 임무, 사무요원의 자격, 근로조건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③ 사무국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33조 (위원회 및 협의회의 설치) 사무총장은 업무추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연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와 분야별 협의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회장(이사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 ① 법인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이버보안 정책, 산업, 교육 등 기능별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 이사회와는 별도로 기능별 위원회의 위원장과 사무총장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다만 운영위원장은 이사회와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협의와 추진을 위해 사무총장이 겸임한다.
- ③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34조 (운영비)

- ① 법인의 운영비는 회원의 회비 및 기타사업의 재원으로 운영비를 충당한다.
- ② 회장(이사장) 및 이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인의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 7 장 재산과 회계

제35조 (재산의 구분)

-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1. 기본재산은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6조 (재산의 관리)

-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7조 (수입금)

- ①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수입금은 다음과 같다.
 - 1. 회비
 - 2. 정부 및 지방자치법인 보조금
 - 3. 각종 기부금
 -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 5. 기타
- ② 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법인은 인터넷을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며, 연간 모금액 및 실적을 다음해 3월말까지 공개하도록 한다.

제38조 (회계년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정한다.

제39조 (예산편성 및 결산)

- ① 법인은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40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1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8 장 지 부

제42조 (지부 설치) 법인은 행정구역(시.도)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 ① 법인의 지부는 본 법인에 대하여 지부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 ② 법인의 지부는 각 행정구역의 단위 명칭을 표시하는 독자적인 명칭을 갖는다.
- ③ 지부 임원은 선출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본 법인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9 장 보 칙

제43조 (정관의 변경)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4조 (규칙 제정) 법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칙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45조 (해산) 본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총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관할 등록기관 및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6조 (잔여재산의 처리)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유사법인에 기증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법인에 귀속한다.

제47조 (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게 제출한다.

제48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9조 (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50조 (경과규정) 이 정관 시행일을 기준으로 종전의 회칙과 정관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분사무소) 분사무소(지부) 설치 현황은 별지로 따로 규정하여도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본 법인의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제4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제5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정관 제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회 설립당초의 임원 및 그 임기는 별지와 같다.

직 위	성 명	주 소	임 기
이 사 장			3년
이 사			1년
이 사			1년
이 사			1년
감 사			3년